#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5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김도읍・신동욱・인요한

박성훈 · 장동혁 · 김은혜

김예지 • 구자근 • 김형동

김정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 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 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④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2.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이용 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 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 중 2 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 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 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